

고덕 아르데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41개동 총 4,066세대 중 일반공급 1,397세대 및 부대시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분		주택형								
		59A	59B	59C	59D	84A	84B	84C	84D	합계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	9	8	2	3	25
	경기도	1	—	—	—	4	4	2	2	13
	인천광역시	1	—	—	—	4	4	2	2	13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1	—	—	1	13	12	5	6	38
장기복무군인		1	—	—	—	7	5	3	3	19
중소기업근로자		1	—	—	—	4	4	2	2	13
북한이탈주민		1	—	—	—	2	2	—	1	6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이하 신청분에 한함)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자의 입주자 저축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제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제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제당첨 제한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제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신중히 청약하시기 바람(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당첨 주택형별 제당첨 제한기간(과열억제지역)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제당첨제한 적용주택(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제대군인,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3. 특별공급 청약방법

■ 신청접수

신청일자	계약체결	장소
특별공급	2017.10.31(화) / 10:00~14:00	고덕 아르테온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43번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7.10.31(화)	

■ 유의사항

구분	내용
특별공급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제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성명기재)],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홈페이지 (www.ap2you.com)에서 발급 •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포함됨)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인정서)	본인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인정서) 또는 추천명단만 인정함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청약자),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전본주택 위치 및 문의전화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o.kr>

전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43번지

문의전화 : 1544-9333

<별첨 #02. 고덕 아르테온 참고자료>

■ 투시도



■ 단지배치도

